[공모펀드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악사 안정30증권자투자신탁1호[채권혼합]

나. 변경 시행일 : 2024년 8월 2일

다. 변경 내용 :

- **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**
  (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'5등급' 1.81% ->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'5등급' 3.70%')
- **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**
- **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**
- **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**
- **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,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**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구분	정정전	정정후
전체	----(생략)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----(생략)---	----(생략)--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----(생략)---
[요약정보]		
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	- 채권: ---(생략)---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	- 채권: ---(생략)---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(이하 "단기사채등"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**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**	**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'5등급' 1.81%**	**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'5등급' 3.70%**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<신설>	<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> <표 신설> 자세한 정보는 (3)환매수수료 또는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

(8)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		여 주시기 바랍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-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연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3년 1월 1 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]	연 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연 1,500 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]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 기준)		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라. 운용자산 규모 -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